(문의)

미국에 섬유제품 수출 시 관련 인증은?

(답변)

미국에 의류에 대한 별도의 인증 또는 규정은 없지만 섬유제품에 대해 준수해야 할 규제가 있습니다.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규제, 시험규격 및 라벨링을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제품에 따라 모든 섬유제품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품목의 경우 섬유제품 규제 면제대상이거나 규제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류는 CPSC의 가연성시험 및 FTC 라벨링 규제 대상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섬유제품 규제 개요

우선 미국으로 섬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CBP 소관)해야 합니다. 또한 섬유구성 및 케어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며 (FTC 소관), Flammable Fabics Act에 의거하여 섬유제품은 재질별로 가연성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CPSC 소관).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관련규제는 EPA(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유기농 섬유일 경우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USDA(농무부)의 유기농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이는 연방법 상에 공통규제 내용이며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는 미국 국가의 특성상 별도의 주별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주(州) 마다 법의 엄격한 정도가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가이드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CBP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What are the regulations for importing textiles?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205/~/regulations-for-importing-textiles

- NIST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A Guide to United States Apparel and Household Textiles Compliance Requirements
https://www.nist.gov/publications/guide-united-states-apparel-and-household-textiles-compliance-requirements

- Office of Textiles and Apparel (OTEXA) > U.S. Labeling Requirements for Textile, Apparel, Footwear and Travel Goods
https://otexa.trade.gov/us_labeling.htm

- ASTM > Textile Standards https://www.astm.org/Standards/textile-standards.html

▶ **관련 규정**

미국의 섬유제품의 규제는 아래의 5개 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며,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주(州)마다 규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관	범주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미국관세국경보호청)	Country of origin for most imported products (원산지표시)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Flammability (가연성), Children's products (어린이용 제품), Hazardous substances (유해물질)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환경청)	Pesticides (살충제),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독성물질)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Labeling (세탁방법, 섬유조성 등)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농무부)	Organic claims (유기농 섬유)

라벨링 규제 개요

▶ **개요**

미국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라벨링 규제가 중첩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 표준기술연구소에서 미국 포장/라벨링 규정에 대한 FAQs 안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 중 일부 주요내용을 임의로 발췌하여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 Labeling requirements related to legal metrology (i.e., products and commodities sold in package form by weight, measure or count) must comply with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FPLA) and Uniform Packaging and Labeling Regulation (UPLR), NIST Handbook 130-Current Edition). In addition, all products imported into the U.S. must conform to Title 19, United States Code, Chapter 4, Section 1304 and 19 CFR 134, Country of Origin Marking regulations. Other product categories, such as electronics, food, medical devices, etc., are covered by regulations from the responsible agency. A product may have to be complaint with several labeling regulations from different agencies.

* 출처 NIST > Compliance FAQs: Packaging and Labeling in the US
https://www.nist.gov/standardsgov/compliance-faqs-packaging-and-labeling-us

 # 일반적 표시사항

- 제조업체 또는 자사 브랜드 명칭
- 제품 생산 장소 및 일자
- 제조 공정에 대한 상세 정보(배치 번호 또는 기타 제품 확인 특성 등)
- 그 외에, 제품의 구체적 자원(source)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보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 표준기술연구소

미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공산품 표시규정과 같이 uniform packaging and labeling regulation에 따라 제품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www.nist.gov)에서는 표시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제품명,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법적 책임자) 정보, 라벨 부착 위치, 제품 상세정보 등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해 주십시오.

Uniform Packaging and Labeling Regulation (UPLR), NIST Handbook 130-Current Edition
: NIST Handbook 130 - 2019 > Uniform Packaging and Labeling Regulation (다운로드 필요)
https://www.nist.gov/pml/weights-and-measures/publications/nist-handbooks/handbook-130

관할기관별 섬유 규제

참고]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각 관할별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미국관세국경보호청) http://www.cbp.gov
원산지 국가 표시: 미국 관세법에 의해,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장소에 원산국의 영어명을 명확하게 표시한 라벨을 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
- Title 19, United States Code, Chapter 4, Section 1304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0-title19/html/USCODE-2010-title19-chap4-subtitleII-partI-sec1304.htm

 # 하위규정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19 CFR 134, Country of Origin Marking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 19 CFR 134, Country of Origin Marking
https://www.gpo.gov/fdsys/pkg/CFR-2012-title19-vol1/pdf/CFR-2012-title19-vol1-part134.pdf
- 19 CFR—CUSTOMS DUTIES U.S.C. § 3592. Rules of origin for textile and apparel products
https://www.gpo.gov/fdsys/pkg/USCODE-2011-title19/pdf/USCODE-2011-title19-chap22-subchapIII-partB-sec3592.pdf

 # 규제내용 : Country of origin for most imported products (원산지표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해야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원산지가 최종 구매자에게 식별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합니다.

다만, 제품의 원자재(예: yarn, thread, wool)와 가공지가 다른 경우 (예: 중국산 실크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블라우스),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산지판별을 위하여 반드시 미국의 원산지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연방규정집 Title19 - 3592에 명시되어 있으니 하위규정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규제는 CBP (미국관세국경보호청)에서 만든 가이던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CBP > Terminology and Methods for Marking of Country of Origin on U.S. Imports
https://www.cbp.gov/trade/rulings/informed-compliance-publications/marking-country-origin-us-imports
- CBP > Requirements for country of origin marking on goods imported into the U.S.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492/related/1/session/L2F2LzEvdGltZS8xNTA0ODU2MzIwL3NpZC9TRDMxYWFzbg%3D%3D
- CBP > Informed Compliance publications
https://www.cbp.gov/trade/rulings/informed-compliance-publications
- CBP > "Importing Into the U.S."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Importing%20into%20the%20U.S.pdf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주로 소비자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감독하며, 제품의 문제가 있는 경우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 관련법
- CPSC > Flammable Fabrics Act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Statutes/Flammable-Fabrics-Act
- Flammable Fabrics Act 법안
https://www.cpsc.gov/s3fs-public/pdfs/blk_pdf_ffa.pdf

 # 하위규정
- Flammable Fabrics Act 관련규정
Title 16 CFR SUBCHAPTER D—FLAMMABLE FABRICS ACT REGULATIONS §1610 (parts1602 ~ 1633은 제품별 가연성 규격)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34e1b57acf0fd4ac8dc13f4cbcad718f&mc=true&tpl=/ecfrbrowse/Title16/16CIIsubchapD.tpl

 # 규제내용
- CPSC의 가연성 규제 Flammable Fabrics Act Regulations
소비자용 완제품인 옷(Apparel)이나 가정용 섬유제품(Household Textiles) 경우 CPSC의 규제 'Flammable Fabrics Act'에 따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CPSC는 Flammable Fabics Act에 의거하여 섬유제품에 대해 재질별로 가연성 시험을 하여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류도 해당규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CPSC의 가연성 규격 중 "Clothing Textile" 관련규격이 있으므로 가연성 규제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 Title 16 §1610 (1610.1 to 1610.61)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F CLOTHING TEXTILES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7334a850a87aab645db5d464e8972ebf&mc=true&tpl=/ecfrbrowse/Title16/16cfr1610_main_02.tpl

- 어린이용 제품 안전 규제

또한 어린이용 제품일 경우 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따라 관련규격을 준수하고 업체가 직접 CPC를 발행해야합니다.

CPSC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모든 제품에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린이용 제품 규제가 엄격한 편입니다. 어린이 제품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CPSC 소비자제품 안전규제 개요**"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PA

미국 환경보호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 물질(Chemical Substance), 혼합물(mixture), 제품(article)은 반드시 사전에 TSCA(Toxic Substance Control Act; 연방 독성물질규제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환경규제법(Clean Air Act,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반출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및 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시험기관에 자세한 문의를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 관련법

Toxic Substance Control Act (TSCA); 연방 독성물질규제법

- Title 15 United States Code 2601-2692

https://www.gpo.gov/fdsys/pkg/USCODE-2014-title15/pdf/USCODE-2014-title15-chap53.pdf

 # 규제내용

이 법안에 의거하여 EPA는 화학물질, 혼합물,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보고(reporting), 기록보관, 시험요구사항, 제한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Toxic Substance Control Act'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섬유제품** 혹은 가구나 가구에 있는 섬유의 경우 내연제 (耐燃劑, flame retardant)로 사용하는 Hexabromocyclobodecane (HBCD)와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PBDE), 염색제로 사용하는 Benzidine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 물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는 작업 90일 전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PBDE action plan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polybrominated-diphenyl-ethers-pbdes-action-plan

- HBCD action plan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hexabromocyclododecane-hbcd-action-plan

- Benzidine dyes action plan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benzidine-dyes-action-plan

- Hexabromocyclododecane (HBCD)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risk-management-hexabro

mocyclododecane-hbcd

- Risk Management for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s) under TSCA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risk-management-and-polyfluoroalkyl-substances-pfass

※ 자료 출처 미국 환경청 EPA www.epa.gov
해외인증정보시스템 > 미국 > EPA-TSCA(화학물질)
http://www.certinfo.or.kr/viewCert.do?certNo=168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미국 FTC에 규제에 따른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이는 CPSC가 규제하는 라벨링과는 별도의 규제입니다. FTC는 제품을 제공하는 제조자/수입업자의 정보제공을 초점에 두고 있다면 CPSC는 제품의 안내 및 경고 문구에 대한 라벨링을 중점으로 관리합니다. 해당될 경우 두 관할기관의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관련법
√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FPLA)**
- Title 15, United States Code, > Chapter 39. 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5/chapter-39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는 관련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거나 소비자의 선택, 제품 사용에 영향을 주어 부상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 참고 FTC >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FPLA)
https://www.ftc.gov/enforcement/rules/rulemaking-regulatory-reform-proceedings/fair-packaging-labeling-act

√ **Textile and Wool Acts**
- Textile Fiber Rule
https://www.ftc.gov/enforcement/rules/rulemaking-regulatory-reform-proceedings/textile-fiber-rule

- Wool Products Labeling Rules
https://www.ftc.gov/enforcement/rules/rulemaking-regulatory-reform-proceedings/wool-products-labeling-rules

- Rules and Regulations Under Fur Products Labeling Act (Fur Rules)
https://www.ftc.gov/enforcement/rules/rulemaking-regulatory-reform-proceedings/rules-regulations-under-fur-products

√ **FTC > 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 미국에 수입되는 섬유 제품은 모두 연방 거래위원회(FTC: The Federal Trade Commission)의 관리하에 있어, 「섬유 제품 식별법(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에 의해, 일정한 정보를 각인, 태그, 라벨 그 외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정보란, 해당 제품의 일반 명칭(상표명 아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나 판매/취급업자의 명칭 및 연락처(또는 FTC로부터 받은 등록번호; Registered Identification Number(RN)), 제품의 원산지 국가명, 섬유 함량(fiber content: 복수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신발의 경우에는 갑피가 복수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5% 이상의 구성물을 섬유 중량 비율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정렬하고, 5% 미만의 섬유의 합계를 「그 외 섬유」로서 중량 비율을 열거)입니다.

- FTC > 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https://www.ftc.gov/enforcement/rules/rulemaking-regulatory-reform-proceedings/textile-products-identification-act-text#70

- 16 CFR 303, Rules And Regulations Under The 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303.45 Coverage and exclusions from the Act 에서 제외 품목 확인 가능)
https://www.gpo.gov/fdsys/pkg/CFR-2015-title16-vol1/pdf/CFR-2015-title16-vol1-part303.pdf

√ **의류나 특정제품에 대한 케어라벨링법**

- 취급 방법 표시 라벨: FTC는, 미국의 수입업자에 대해 섬유 제품으로 취급 방법을 나타내는 케어 라벨(care label)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어 라벨은 반드시 제품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만 하며, 그 내용에는 세탁 방법(세탁, 건조, 다림질, 표백 및 경고 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드라이클리닝 방법(일반적인 순서와 경고 사항에 대해 설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검사, 기술 자료)가 포함됩니다. 섬유 제품에 대한 케어 라벨 규정은 연방 규칙 「16 CFR Part 423.6 Textile wearing apparel」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케어 라벨은 통관 전에 부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판매 전에 부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취급방법 기호는 ASTM D 5489-07(2013) Standard Guide for Care Symbols for Care Instructions on Textile Products 에 나와 있습니다.

- FTC > Care Labeling of Textile Wearing Apparel & Certain Piece Goods
https://www.ftc.gov/node/119456
https://www.ftc.gov/enforcement/rules/rulemaking-regulatory-reform-proceedings/care-labeling-textile-wearing-apparel

- 16 CFR 423 - CARE LABELING OF TEXTILE WEARING APPAREL AND CERTAIN PIECE GOODS AS AMENDED
https://www.govinfo.gov/app/details/CFR-2000-title16-vol1/CFR-2000-title16-vol1-part423

 # 규제내용

√ Textile and Wool Acts에 따른 라벨링 요구사항(labeling requirements)

FTC가 규제하고 있는 섬유, 울제품(textile and wool products)에 대한 연방 라벨링 요구사항(federal labeling requirements)은 대부분의 섬유, 울제품에 대해 섬유조성(fiber content), 원산지(country of origin), 제조자(manufacturer) 혹은 제품 취급, 마케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업체의 정보(identity)를 명시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의류 및 섬유 제품은 이 라벨링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아래 참고링크에서 FTC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Textile Products: What's Covered and What's Not" 항목에서 Textile and Wool Acts에 따른 라벨링 요구사항 대상품목과 대상품목이 아닌 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FTC의 Textile and Wool Acts에 따른 라벨링 요구사항(Labeling Requirements) 대상(Covered) 제품목록에 'Clothing, except for hats and shoes'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류는 **FTC의 라벨링 요구사항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Threading Your Way Through the Labeling Requirements Under the Textile and Wool Acts
https://www.ftc.gov/tips-advice/business-center/guidance/threading-your-way-through-labeling-requirements-under-textile

√ 표시 사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규정에 따라 귀사의 제품이 해당될 경우 섬유제품(필요한 경우 포장에도)에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이름 및 섬유 조성 (백분율)
- 원산지
- 세탁방법(care labeling)
- 제조자 또는 담당 회사 또는 등록번호 (RN, registered identification nu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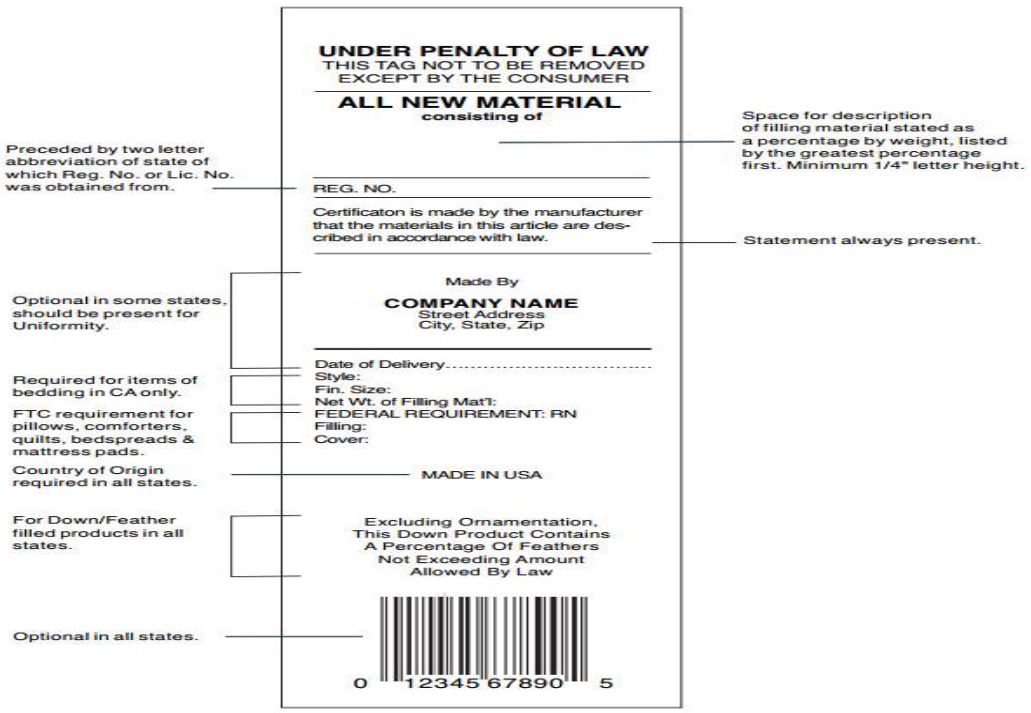
√ Registered Identification Number (RN, 제조자 등록 식별번호)

FTC는 제조자/업체에 대한 정보를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FTC가 발행하는 제조자 등록식별번호(RN)를 받아 표시해야합니다.

- FTC > Registered Identification Number Database
https://www.ftc.gov/tips-advice/business-center/selected-industries/registered-identification-number-database

- FTC > Apply for a new RN or update an existing RN
https://rn.ftc.gov/Account/ApplyForNewRN

- FTC > Registered Identification Number: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ftc.gov/tips-advice/business-center/selected-industries/registered-identification-number-frequently-asked



<라벨링 예시>

 # 대표적인 국내 섬유 시험기관

미국으로 수출하는 섬유제품에 대한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FITI 시험연구원 (http://www.fiti.re.kr/) / 02-3299-8000
  담당자: 해외사업팀 (02-3299-8025)
- KATRI 시험연구원 (http://www.katri.re.kr/) / 02-3668-3000
  02-3668-3000 (미주 유럽시험부서 선택)

※ 출처

A Guide to United States Furniture Compliance Requirements (10쪽 확인)
https://nvlpubs.nist.gov/nistpubs/ir/2016/NIST.IR.8119.pdf
A Guide to United States Apparel and Household Textiles Compliance Requirements (14쪽)
https://nvlpubs.nist.gov/nistpubs/ir/2016/NIST.IR.8115.pdf

CPSC 소비자제품 안전규제 개요

▶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www.cpsc.gov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인증을 발행하는 인증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불량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사후관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안전규격을 지키지 않은 불량제품에 대한 규제와 리콜을 담당합니다.

모든 소비자제품은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CPSC)의 규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연성 물질이나 화재위험성에 대해 CPSIA법에 근거하여 CPSC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은 다양하며 중첩될 수 있습니다. CPSC는 이러한 법을 근거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CPSIA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 법: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생산자, 수입업자 또는 도, 소매업자에게 미국 내 유통 중인 상품에 대해 안전성 및 유해성을 사전에 검증한 후 유통시키도록 의무를 부과(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강력한 조치 수반), 이를 검증키 위해 종전 자국 시험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제3자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해당 시험을 진행하고 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관련 내용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페이지(영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CONSUMER PRODUCT SAFETY MPROVEMENT ACT OF 2008
https://www.cpsc.gov/s3fs-public/cpsia.pdf

- CPSC >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Statutes/The-Consumer-Product-Safety-Improvement-Act

 # 제품별 CPSC의 규정, 강제규격 및 금지 사항

- CPSC > Regulations, Mandatory Standards and Bans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Regulations-Mandatory-Standards-Bans

 # 자체 시험을 통한 규정만족 및 사후관리

CPSC에는 어린이제품을 제외하고 사전 인증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가 소비자 제품 판매전에 반드시 강제 규제되는 요건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제품에 적용되는 강제 규제가 없더라도 제조자/유통업자는 미국 시장에 안전한 제품을 유통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의 모든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안전규격 검토 후 해당규격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CPSC의 강제규제사항이 없을 경우 업체 자체적으로 이를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임의인증 및 시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CPSC는 시장 감시 및 부적합 신고 제도를 통해 이의 이행을 검사합니다. 귀사의 제품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일반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는 CPSC의 리콜 및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삼성 Galaxy Note7 스마트폰의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사고로 인한 CPSC 리콜명령 사례
- Samsung Recalls Galaxy Note7 Smartphones Due to Serious Fire and Burn Hazards
https://www.cpsc.gov/Recalls/2016/samsung-recalls-galaxy-note7-smartphones

- Samsung Expands Recall of Galaxy Note7 Smartphones Based on Additional Incidents with Replacement Phones; Serious Fire and Burn Hazards
https://www.cpsc.gov/Recalls/2016/samsung-expands-recall-of-galaxy-note7-smartphones-based-on-additional-incidents-with

이러한 이유로 제품에 대한 국가 강제규제나 인증이 없더라도 업계 내에서 혹은 바이어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나 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업계/리테일러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저희 1381이 수많은 임의인증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제조자가 현지 시장 동향과 주요 타겟층 설정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GCC 인증서 : CPSC 일반 성인용 제품 인증
어린이용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미국)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일부제품의 경우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자 안전규제에 따라 적절한 시험 후 자기 적합성 선언(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o, GCC)를 작성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합니다.

- CPSC >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GCC 개요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General-Certificate-of-Conformity/
- CPSC > Sample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GCC) GCC 작성 예시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General-Certificate-of-Conformity-GCC
- CPSC > Rules Requiring a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GCC)
: GCC를 작성해야하는 일반제품 리스트(The list of non-children's (general use) products requiring a certificate)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Lab-Accreditation/Rules-Requiring-a-General-Certificate-of-Conformity

 # CPC 인증서 : CPSC 어린이용 제품 인증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일 경우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장난감에 대해 제조자 및 수입자는 반드시 CPSC 지정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CPC(아동제품인증서;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를 발급해야 합니다. CPC는 CPSC 지정 시험소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를 근거로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인증서상에 제품이 장난감 안전규정에 만족함을 명시해야 하며, CPC 및 성적서는 모두 영문이어야 합니다.
CPC에 들어가야 하는 문구(statement)는 아래 예시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PSC -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Childrens-Product-Certificate/

- CPSC > Rules Requiring Third-Party Testing and a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제3시험소 시험과 CPC인증서를 요구하는 규정)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Lab-Accreditation/Rules-Requiring-Third-Party-Testing

 # 트래킹라벨 (Tracking Label) 규제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일 경우만)
- CPSC > Tracking Label Requirement for Children's Produc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tracking-label
- CPSC > Tracking Labels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Rulemaking/Final-and-Proposed-Rules/Tracking-Labels

※ 출처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www.certinfo.or.kr
- CPSC - Regulations, Mandatory Standards and Bans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Regulations-Mandatory-Standards-Bans/
- CPSC > Voluntary Standards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Voluntary-Standards
- CPSC > Regulatons Laws & Standards > Statutes
https://www.cpsc.gov/th/regulations-laws--standards/statutes/the-consumer-product-safety-improvement-act
-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
https://www.cpsc.gov/th/regulations-laws--standards/statutes/the-consumer-product-safety-improvement-act
-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 Requirements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FHSA-Requirements/
- CPSC -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Childrens-Product-Certificate/

※ 참고자료
- http://www.kofoti.or.kr/bbs/data/1304_data3_02.pdf 한국섬유산업연합회-CPSIA규제동향
- http://user.kotiti.re.kr/technic/Vol11No211.pdf KOTITI시험연구원-CPSC
- CPSC > Business & Manufacturing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
- CPSC > Business Education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

※ CPSC에서 발행한 제품 사용법/주의사항 등이 담긴 제품 안내서(Product Instructions) 안내 가이드입니다. 제품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CPSC 규제 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니 소비자 제품 규제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항목에서 확인하여주십시오.
CPSC (미국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의 **제품 안내서(Product Instructions) 안내 가이드**
MANUFACTURER'S GUIDE TO DEVELOPING CONSUMER PRODUCT INSTRUCTIONS
https://www.cpsc.gov/s3fs-public/pdfs/guide.pdf

주 별 규 제

다만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강제인증보다는 각종 자율/민간 인증이 통용되는 형태로 사전인증제도보다는 리콜/처벌 등의 사후 엄격한 관리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보증할 책임은 제조자/수입업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미국의 특성상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고 있어 주 정부가 민간인증을 채택하여 강제하거나 주별 규제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자율인증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강제인증과 같이 통용될 수 있으며 **해당품목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내 강제처럼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별 규제 및 임의인증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지 바이어/수입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요구되는 인증이나 규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Note: All 50 states have some type of packaging and labeling regulations in effect and all have separate requirements in their laws that require all packages to bear information regarding identity, responsibility, and quantity, so even if a product is exempt under the UPLR the requirements of the state law can still be applied.

* 출처 NIST > Compliance FAQs: Packaging and Labeling in the US
https://www.nist.gov/standardsgov/compliance-faqs-packaging-and-labeling-us

미국은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는 거의 없으며 주마다 포장, 라벨링 규정에 따른 각각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정보, 책임, 양(크기, 개수 등)에 따른 정보를 포함한 포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NIST의 UPLR 규제에서 면제되는 품목일지라도 주별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대한 주별 규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참고
몇몇 주는 추가적으로 연방법보다 더욱 엄격한 주별 규제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은 소비자 제품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편입니다.)
예) Apparel, Household Textiles에 적용되는 주별 강제 규제 (참고)

Agency/Organization	Scope
Stat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Weights and Measures	Labeling
Toxics in Packaging Clearinghouse (TPCH)	Packagin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edding and Furniture Law Officials (IABFLO)	Labeling
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	Toxic chemicals
California Bureau of Electronics and Appliance Repair, Home Furnishings and Thermal Insulation (BEARHFTI)	Plumage, flammability of upholstered furniture and bedding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Made in the USA claims
Connecticut Department of Consumer Protection	Asbestos in children's products

Illinoi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Lead labeling
Minnesota Department of Commerce	Formaldehyde in children's products
Washington Department of Ecology	Lead, cadmium, and phthalates in children's products
Several states	Flame retardants, fur labeling, chemicals of concern

* 출처: A Guide to United States Apparel and Household Textiles Compliance Requirements (19-20쪽)
https://nvlpubs.nist.gov/nistpubs/ir/2016/NIST.IR.8115.pdf

예 2) 캘리포니아 주는 BEARHFTI에서 4 CCR § 1370-1374.3에 의거하여 원산지와 관계없이 겉 천을 덧 덴 가구나 침구류(bedding)에 대해 시험 후 라벨링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4 CCR § 1370-1374.3 > Article 13. Flammability Regulations
https://govt.westlaw.com/calregs/Browse/Home/California/CaliforniaCodeofRegulations?guid=IA3113CC1D45811DEA95CA4428EC25FA0&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28sc.Default%29&bhcp=1

캘리포니아는 추가로 The Proposition 65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특정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 OEHHA > Proposition 65
https://oehha.ca.gov/proposition-65
OEHHA > The Proposition 65 List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TUV SUD > California Proposition 65 > 캘리포니아 법령 65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https://www.tuv-sud.kr/kr-kr/activity/testing-product-certification/california-proposition-65

예 3) 펜실베니아 stuffed toy 규제
the toy association > Stuffed Toy Licensing and Labeling Laws
https://www.toyassociation.org/App_Themes/toyassociation_resp/downloads/advocacy/state/stuffed-toy-licensing-and-labeling-laws.pdf

Pennsylvania Department of Labor & Industry Stuffed Toy Regulations
http://www.dli.pa.gov/Individuals/Labor-Management-Relations/bois/Pages/Stuffed-Toys-Regulations.aspx

임 의 인 증

해당 제품에 요구되는 강제인증이 없어도 민간단체에 의한 임의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은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띄고있더라도 업계에서 강제처럼 통용되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요구사항, 규제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용도의 여타 강제 인증과는 달리 민간 임의인증은 임의, 자율인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 자체적으로 제품을 증명하는 품질인증이므로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규격을 선택하여 시험하신 후 DoC를 발행하시거나 해당 규격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을 경우 시험 후 해당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DoC는 말 그대로 업체 본인이 선언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온라인상에 게재된 DoC form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미국 현지의 수입업체, 현지 KOTRA 무역관 또는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 1381이 수많은 임의인증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제조자가 현지 시장동향과 주요 타겟층 설정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지 동향이나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 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북미지역본부**: http://www.kotra.or.kr/KBC/northamerica/KTMIUI010M.html
  뉴욕무역관(미국) / 달라스무역관(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미국) / 마이애미무역관(미국) / 시카고무역관(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미국) / 워싱톤무역관(미국)

- **KOTRA trade doctor** http://tradedoctor.kotra.or.kr/bp/main/BPMAIN040M.html?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사업 공고문 및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9091/info/ktrInfo.do?key=9093
사업 문의 : 02-2164-0172~8
사업 내용 :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
(지원규모) 140개사 내외
(지원금액) 기업 당 100,000천원 한도(인증획득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신청기간) 19.08.01.(목) ~ 19.08.30.(금) 18:00 (2019년도 지원사업 종료)

※ 주 의 !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수출관련 인증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인증사항 이외의 세금 및 HS Code는 현지 세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섬유제품/소비자제품에 대한 미국 연방규제(강제)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이외에 주별 규제와 민간 사기업 규정(아마존)은 저희 업무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 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 가격 등의 상세 실무정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